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63
----------	---------

제출연월일	2003. 11.
제출자	거창군수

## □ 개정이유

- 2004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 바,
- 그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코자 함.

## □ 주요골자

- 배수설비 공사비는 선납해야 하나,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조)
-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5% 인상함(안 제11조제2항 별표1)
-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16조제3항, 제4항)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별표 5

## □ 개정근거

- 군수방침안(2003. 3)
- 2003년도 지방상 · 하수도사업 추진지침 : 행정자치부
-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거창군소비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함(2003.5.30)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 3 조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신청이 있을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 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 5 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
-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하수관거 준설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사용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신고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 13 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 ⑤ 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 15 조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의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한다.
-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 16 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논공단지 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거창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 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 (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 18 조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9 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 21 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이내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이후부터 조정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업종별 하수도 사용 요율표

업 종 구 分	사용량구분( $m^3$ )	$m^3$ 당단가(원)	비 고
가 정 용	1 ~ 20	94	
	21 ~ 30	125	
	31 이상	167	
일 반 용	1 ~ 30	110	
	31 ~ 50	139	
	51 ~ 100	169	
	101 ~ 300	195	
	301 이상	242	
대중탕용	1 ~ 200	120	
	201 ~ 300	147	
	301 ~ 500	172	
	501 이상	200	
산 업 용	1톤당	109	

【별표 2】

##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하수도 사용자</li> <li>2. 담배 · 연탄 · 양곡 · 문방구 · 지물 ·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명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li> <li>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도 사용 업소</li> </ul>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목욕장업</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ul>

### 【별표3】

## 수질하수도사용료

###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 $\text{mg}/\ell$ ) × 시간당 폐수 배출량( $\text{m}^3$ )】 × 1/1,000) × kg단가 × 1일조업시간 × 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4】

##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8

## 【별표5】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text{m}^3\text{당 원인자 부담금}(\text{원}/\text{m}^3) \times \text{하수발생량}(\text{m}^3/\text{일})$$

※  $\text{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times \frac{1}{\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text{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text{m}^3\text{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공고(공보)$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text{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text{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100})^n$$

n: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통 반)				
	관종	PVC관, PE관, 흠판,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배출수량	m <sup>3</sup> /일		※ 환경부 고시 제97-85(97.9.18)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검사 검사일자 ( . . )	2차검사 검사일자 ( .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인)	명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2003~64
----------	---------

제출연월일	2003. 11.
제출자	거창군수

## □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의거 1일 생산 능력 15,000톤이상인 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미 전환시 지방채 발행 불허 및 국고보조사업, 교부세 시책사업 제외 등 각종 재정지원에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 2004. 1. 1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상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급수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함(안 제3조)
-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함(안 제4조)
-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함(안 제5조)
-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를 정함(안 제7조)
-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함(안 제9조)
-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함(안 제12조)
-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4조)
- 예산의 탄력규정을 정함(안 제15조)
-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6조)
-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8조)
- 업무상환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9조)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 □ 제정근거

- 군수방침(2002. 12)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 (급수지역)** 거창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거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 4 조 (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 5 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 10 조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 11 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관련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 12 조 (출자)** 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 13 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 14 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 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예산의 집행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 16 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 17 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 18 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 주간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거창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계상)**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 안 번 호	2003~65
------------	---------

제출연월일	2003. 11.
제 출 자	거창군수

## □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장 설비를 구비한 하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함.
- 2004. 1. 1 공기업 전환 업무개시를 원활히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하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사업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함(안 제3조)
-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함(안 제4조)
-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함(안 제5조)
-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를 정함(안 제7조)
-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함(안 제9조)
-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함(안 제12조)
-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4조)
- 예산의 탄력규정을 정함(안 제15조)
-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6조)
-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8조)
- 업무상환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9조)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 □ 제정근거

- 군수방침(2002. 12)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 (사업구역)** 거창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 5 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0 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11 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 12 조 (출자)** 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화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 13 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 14 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예산의 집행규정)**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②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거창군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 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 17 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 18 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